

의안 번호	494
----------	-----

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

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
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9. 5.

전문위원 강영숙

1. 제안경위

가. 제출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494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08. 18.

라. 회부일자 : 2025. 08. 27.

2. 제안이유

- 우리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성북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 센터 위탁기간 만료일(2025. 12. 31.) 도래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(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)을 추진함에 있어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지속(재위탁)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시설 : 성북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
- 나. 위탁기간 : 2026. 1. 1. ~ 2028. 12. 31.(3년)
- 다. 위탁방법 : 「수탁기관 선정위원회」 심의에 의해 선정
- 라. 위탁사무내용
-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소 등록 관리
 - 등록 급식소 위생,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
 - 대상별 방문 및 집합교육(시설이용자, 조리원, 원장, 교사 등)
 - 급식관리 매뉴얼,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

마. 기존 위탁현황

기관명	소재지	규모	위탁기간(최초 위탁일)
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	장월로1마길 56 (월곡2동)	151m ²	2023. 1. 1.~2025. 12. 31. (2011. 4. 6.)

※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5. 7월부터 위탁 운영 중(기존 위·수탁협약 변경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
「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□ 동의안 개요

-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성북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재위탁(공개모집) 추진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'성북구 민간위탁 조례') 제4조제3항1)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
<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>

시설명	위치	규모	종사자수	위탁법인	'25년 사업비
				협약기간	
성북구 어린이·사회복 지급식관리지원 센터	장월로1마길 56 (월곡2동)	151㎡	15명	동덕여자대학교 신학협력단 2023. 1. 1~2025.12.31 (3년)	743,300천원

□ 주요내용

- 재위탁 대상 성북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탁기간이 2025. 12.31자로 만료되기에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, 위탁체결일로부터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1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□ 민간위탁의 적정성

- 성북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는 「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」 제21조제3항²⁾ 및 「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³⁾, 「성북구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, 「성북구 민간위탁 조례」 제10조제2항⁴⁾에 의거 3년간 위탁할 수 있음.
- 또한 성북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지원하는 사무로써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으로의 위탁운영은 적정해 보임.

□ 종합의견

-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「성북구 민간위탁 조례」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2)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제21조제3항제21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^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, 「학교급식법」 제5조 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·운영할 수 있다.

3) 「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조 제5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^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,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.

4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10조(계약체결)^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